

# S마크 인증제도

한국산업안전공단(산업안전연구원, KISCO)은 지난 7월 1일부터 안전인증제도(S마크)를 실시하였다.

S마크를 획득할 경우 상호 인정협정이 체결된 EU인증기관으로부터 CE(communautes Europeene)마킹을 위한 적합성인증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등의 특혜가 부여되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 윤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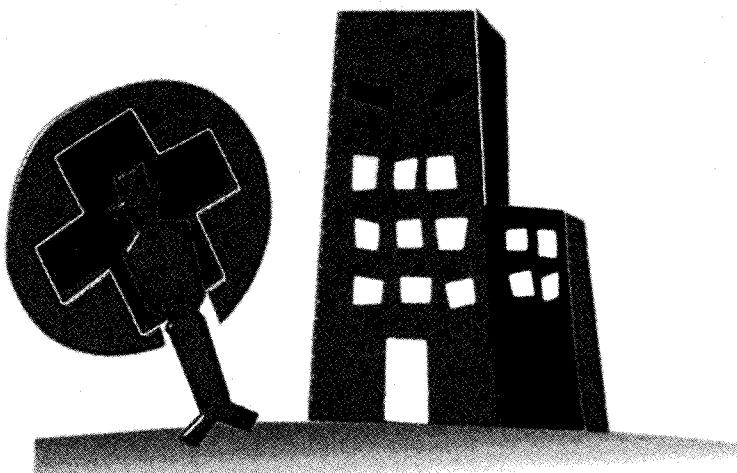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인증센터 실장

## 1. 안전인증제도 개요

### 1) 안전인증이란



인증이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일정한 기준·규격에 적합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며 그 표시로 일정한 “마크”를 부여하게 된다. S마크(안전)인증이란 어떤 제품(특히 기계·기구)의 재질·구조·강도 등이 안전성이 있고 그 생산·품질관리 과정이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한국산업안전공단(안전인증센터)이 확인하고 생산되는 제품이나 포장 및 광고를 함께 있어서 Safety를 상징할 수 있도록 “S마크(마크 참조)”를 표시할 수 있게 하는 인증제도를 말한다.



### 2) 세계의 주요 안전인증마크 소개

#### (1) CE마크



CE마크는 EU역 내 시장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독자적인 인증(표준)제도로 인하여 상품교육이 벽에 부딪치면서 EU 통일규격의 필요에 의해 탄생된 인증제도이다. 이 마크는 “소비자의 건강·안전·위생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위험의 감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소위 안전인증제도로 분류되고 있다. 가맹국은 EU 15개국이며 준용국은 3개국(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 슈타인)이나 인근 동구제국도 거의 EU 방침이나 규격을 준용 또는 인정하려는 추세에 있다.



### (2) UL마크

미국의 보험업자들이 연합하여 시험소를 설립하고 제품이나 그에 사용된 재료, 부품에 이르기까지 안전규격의 제정 및 위험성의 조사·시험·평가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에는 UL 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 UL : Underwriters Laboratories

UL마크는 순수 임의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적으로 알려진 안전 인증마크로 성장하였으며 미국에서는 제도적으로 일부 인정하고 일부 UL규격은 국가표준 규격으로 채택하고 있다.



### (3) GS마크

독일의 GS마크는 독일의 기계·기구 안전법에 따른 안전성 확보 제도이나 강제 인증마크는 아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시험을 거쳐 인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GS : Geprüfte Sicherheit



### (4) 안전마크

일본의 S마크는 일반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제품을 “특정제품”으로 지정하여 인증을 받도록 한 강제인증 제도이다.

특정제품이 아닌 일반 제품중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것에 대하여 민간단체(제품안전협회)를 설립하여 SG(Safety Goods)마크라는 임의 안전인증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 2. S마크제도의 도입 배경과 예상 효과

### (1) S마크 제도 도입의 배경

1) 기계·기구로 인한 사고와 산재의 빈발

□ 생산설비(기계·기구)는 점차 고속화·거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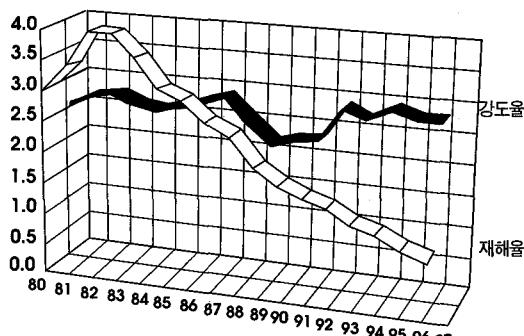
되고 있고 매카트로닉스화 및 시스템화가 급진전됨으로써 위험이 잠재되고 있는 추세이나 기계설비의 대부분은 설계나 제조·판매 및 사용에 대하여 일정한 안전이나 품질의 확보대책도 없이 누구나 생산·판매할 수 있으므로 위험하고 품질이 낮은 기계·기구가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선택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는 중대 사고와 산재의 빈발 및 재해 강도율이 높게 형성되는 원인을 구성하고 있다.

즉 작업자(인간)의 특성과 생산환경의 변화속도를 감안하여 기계·기구를 설계·제작·사용함에 있어서 Fool-proof와 Fail-safe원리를 철저히 적용함이 바람직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 cost문제와 안전의식의 결여 등으로 이 부분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금이야말로 기계·기구 및 설비에 있어서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시점에 있다.

### 2) PL제도 도입 등 선진사회로의 진입대비

이 세상의 모든 물건 중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을 완벽한 안전성을 갖춘 물건이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인공으로 제조된 제품이나 동력으로 작동되는 것인 경우 위험성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제조물과 관련된 사고에 대하여는 제조자 및 그 관련자(유통·운송·판매자 등)에 대하여 각각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격히 부과하고

〈그림〉 우리나라의 재해율과 강도율 변화



있다.

즉, 과거에는 일반법(민·형법)에 의하여 피해자가 제조자 등의 불법행위 책임을 소명하여야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었으나 최근의 경향은 제조자 등이 스스로 위험하지 않다는(또는 안전하다는) 무과실 책임을 입증하여야만 이 보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더구나 제조물 책임법(소위 PL법)은 이와 같은 내용을 법제화함으로서 모든 제조물에 대한 안전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소위 품질은 기업자율에 맡길 수 있으나 안전은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추세에 미처 대응하지 못한 많은 기업들이 사고피해에 대한 부담을 이기지 못하여 파산되고 있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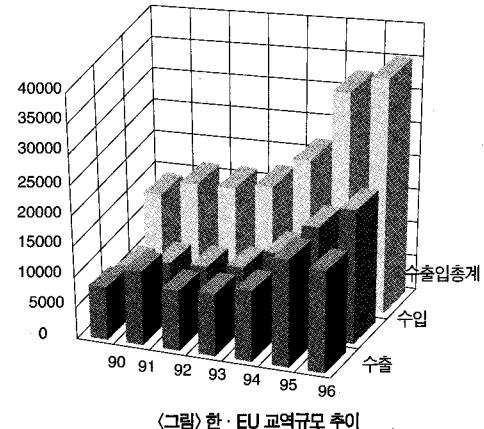
### 3) CE마킹 등 수출(기술)장벽 돌파

세계적인 무역자유화와 각종 규제·제도의 완화(자율화) 바람에도 불구하고 현대 자본주의의 중심사상은 인명의 존중과 사유재산의 중요성으로 대표될 수 있듯 사람의 신체·생명에 위해를 끼칠 수 있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줄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제조 및 유통(교역)을 제한하려 하는 것이 선진국들의 자세이다. 표면적으로는 인명존중의 목표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술 후진국의 상품반입(수입)을 통제하여 국제무역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례를 기술장벽(TR)이라 할 수도 있겠는데 그 대표적 사례가 EU의 CE마킹 제도이다.

CE마킹을 하지 못한 제품은 EU로의 반입(수입) 및 유통이 불가능하도록 함으로서 우리나라의 기계류, 완구류 등의 EU수출에 큰 타격을 입고 국제수지 악화 및 경제난국에 한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그림설명) 1. EMC TEST 및 그 결과 CE마킹이 의



〈그림〉 한·EU 교역규모 추이

무화된 '97년도에 EU로의 수출이 오히려 감소(6%) 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수입은 큰 폭(17%)으로 늘고 있어서 CE마킹제도로 인한 영향이 큼을 알 수 있다.

(자료 : 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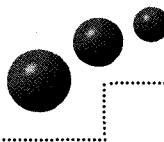
### 2) S마크 제도 도입시 예상효과

□ S마크제도의 추진으로 얻을 수 있는 잇점

○ 생산설비(기계·기구)의 근원적 안전성을 강제적 수법이 아닌 임의제도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기계·기구 및 부품산업의 국제화 및 질의 향상이 촉진되면서 기계의 수명이 향상되고 고장율이 줄어들게 되며 이와 같은 것은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생산성 향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기계·기구 등은 사용을 하기전에는 그 성능이나 안전성의 판별이 어려웠을 뿐아니라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사전에 안전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S마크는 비전문가의 기계·기구 선택·사용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S마크 인증으로 기계·기구(제품)의 안전성이



향상되면 산업재해예방 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각종 피해보상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PL보험시 보험료의 부담이 줄게될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적 부담(산재, 화재보험 등)에서 우대 받고,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제고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급작스런 제품회수(Recall)나 예상치 못한 엄청난 피해보상금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 **S마크**는 우리나라의 기계·기구안전(신뢰성) 수준을 향상토록 함은 물론 **CE**인증기관과 상호인증 협정을 추진함으로서 **S마크**의 취득은 **CE**마킹의 지름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뿐만 아니라 **S마크**와 **CE**마크 적합성인증서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바 이는 대 **EU** 수출 장벽 돌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이 **CE**마킹을 하고자 할 때 겪고 있는 외국의 인증기관과의 언어소통 어려움과 비용부담의 과중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각종 선진국의 새로운 제도에 관한 정보수집·기술자료 입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가간 상호인증협정이 진행되고 있는 향후 3-5년이내에는 협정이 성사될 것으로 가정할 때 이에 미리밀 대비하지 않는다면 매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에 적극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 셈이다.

### 3. “**S마크**” 인증 추진계획

#### 1) 개관

#####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의2~6(기계기구의 안전인증 등)/제68조(별칙)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7조

(행정권한의 위탁)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59조, 59조의 2~11(안전인증의 대상 등)

#### □ 내용

○ 대상 :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계·기구

○ 신청자 : 제조자(해외 제조자도 신청 가능)

※ 제조자가 아닌 판매·수입자 등은 인증을 신청할 수 없음.

○ 인증절차 등 : 노동부령 등에서 정함

-증표 : **S마크**

-인증기관 : 한국산업안전공단(안전인증센터)

-인증절차 : 인증신청→심사 및 시험(인증요건-설계도서-현장실사-제품시험·검사)→종합평가→인증여부결정(심의위원회)→인증서 발급→생산→사후 관리(정기 또는 수시 확인점검)

※ 단, 인증신청자문 또는 상담가능.

○ **S마크** 사용 : 제품, 포장, 용기, 광고 등에 활용

○ 인증취소 : 부정취득, 기준 부적합시

○ 유사 증표 사용금지

○ 벌칙 : 인증을 받지 않고 증표를 사용·광고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본 안전인증제도(“**S마크**”)는 노동부령에서 정하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인증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희망하는 제조자에게만 인증을 실시함)

#### 2) 인증대상

○ 기계·기구 및 설비 : 프레스, 전단기, 아세틸렌 용접장치, 가스집합용접장치, 방폭용전기기계·기구, 교류아아크용접기, 크레인, 승강기, 곤도라, 리프

트, 압력용기, 보일러, 로울러기, 연삭기, 목재가공용 등근톱, 동력식 수동대폐, 정전 및 활선 작업에 필요 한 절연용 기구,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 한 가설기자재

- 산업용 기계·기구 : 사출성형기, 콘베이어 등으로 인증이 필요한 것

- 방호장치 : 전자감응식·양수조작식·케이트가드식 방호장치

- 기타 안전인증기관에서 요청하는 것으로 노동부장관이 승인한 기계·기구

### 3) 인증기준 및 인증심의위원회

- 기본 필수기준과 개별·특성기준으로 기준을 구분하여 적용

- 공통적이고 필수기준은 KISCO CODE로 공표 추진(안전인증 심사기준)

- 기계·기구별·특성기준은 미리 그 기준을 제정·공표하는데 무리가 있으므로 인증 신청이 접수 되는 경우 관련법·령·기준이나 KS, EN, ISO, IEC 등 통용되는 국제기준 중 가장 적합한 기준을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선택하여 적용한다.
- 단, 신청인이 해외 유명규격을 획득할 예정으로서 해당규격(기준)으로 심사를 희망하는 경우나 상호 인증 협정이 체결되는 경우는 해당 규격(기준)으로 심사하게 된다.

- 인증심의위원회

- 구성 : 4개분야 전문가 각 5명 등 총 20여명내외로 구성

- 안전·품질·생산 및 경영관리 분야

– 기계·인간공학 분야

– 전기·전자 및 시스템 안전분야

– 보건·위생·기타분야

#### ○ 기능

– 인증대상 및 기준의 설정(심의·의결)

– 인증심사 결과의 승인(인증여부 결정) 등 인증 관련 주요사항 심의

○ 운영 : 전체회의, 분과회의 및 소위원회

– 형태운영

– 전체회의 : 주요사항 심의 의결시

– 분과회의 : 해당분야 심사기준 제정 등 해당 부분의 전문·심층 검토 필요시

– 소위원회 : 분야별 1~2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심의 의결하도록 함.

○ 운영세칙을 제정하여 운영방법에 대한 기준을 정함

### 4) 인증방법

#### □ 인증의 단위

기계·기구의 형식별로 실시

□ 인증심사의 형태

○ 요건 검토

○ 설계도서 심사

○ 현장 실사

○ 제품검사로 구분 또는 병합 심사함

#### □ 심사의 내용

○ 요건 검토

– 인증의 대상과 신청자의 요건

– 제출서류 구비여부 등을 설계도서 심사 전에 검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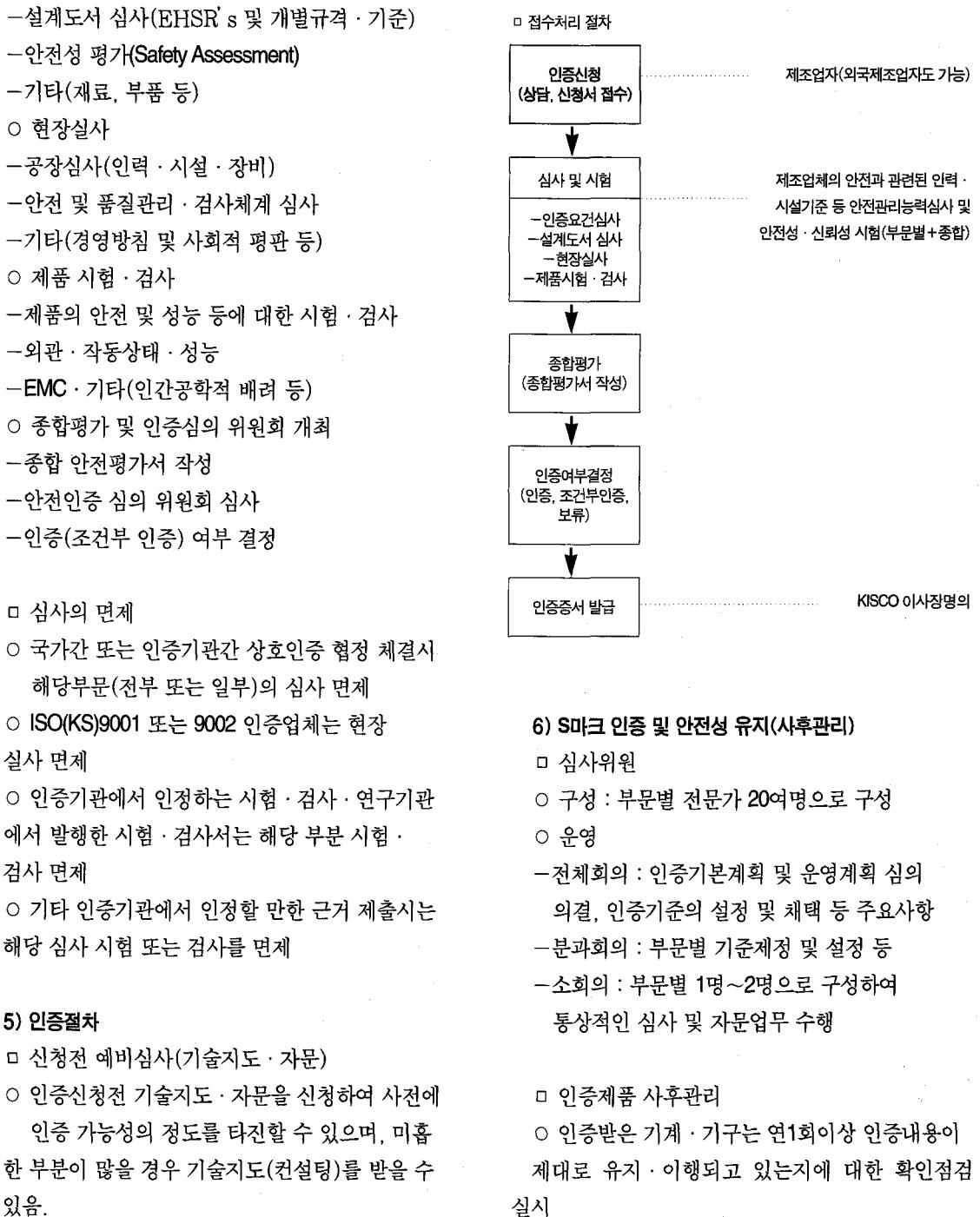
○ 설계도서 심사

– 인증심사기준 적합성 심사

- 설계도서 심사(EHSR's 및 개별규격·기준)
- 안전성 평가(Safety Assessment)
  - 기타(재료, 부품 등)
- 현장실사
  - 공장심사(인력·시설·장비)
  - 안전 및 품질관리·검사체계 심사
  - 기타(경영방침 및 사회적 평판 등)
- 제품 시험·검사
  - 제품의 안전 및 성능 등에 대한 시험·검사
  - 외관·작동상태·성능
  - EMC·기타(인간공학적 배려 등)
- 종합평가 및 인증심의 위원회 개최
  - 종합 안전평가서 작성
  - 안전인증 심의 위원회 심사
  - 인증(조건부 인증) 여부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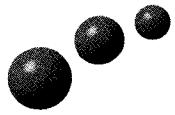
- 심사의 면제
  - 국가간 또는 인증기관간 상호인증 협정 체결시 해당부문(전부 또는 일부)의 심사 면제
  - ISO(KS)9001 또는 9002 인증업체는 현장 실사 면제
  - 인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검사·연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검사서는 해당 부분 시험·검사 면제
  - 기타 인증기관에서 인정할 만한 근거 제출시는 해당 심사 시험 또는 검사를 면제

## 5) 인증절차



## 6) S마크 인증 및 안전성 유지(사후관리)

- 심사위원회
  - 구성: 부문별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
  - 운영
    - 전체회의: 인증기본계획 및 운영계획 심의 의결, 인증기준의 설정 및 채택 등 주요사항
    - 분과회의: 부문별 기준제정 및 설정 등
    - 소회의: 부문별 1명~2명으로 구성하여 통상적인 심사 및 자문업무 수행
- 인증제품 사후관리
  - 인증받은 기계·기구는 연1회이상 인증내용이 제대로 유지·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점검 실시



- 정기확인 : 형식승인품(반기 1회),  
기타 인증품(년 1회)
- 수시확인 : 중대재해발생 등 필요시마다 실시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및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 사후에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인증취소 및 재인증을 받도록 행정 조치
- 부분 변경의 신고세조 실시

## 7) 인증제품 지원 대책

- 산안법 제33조에 의한 검정면제
- 산안법 제34조에 의한 검사(설계·성능검사) 면제
- 산안법 제35조에 의한 검정면제
- 정부조달물품 구매시 우선구매 추진
- 안전인증품 구매시 조세감면 혜택 부여 추진
- 기타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등 제정·기술지원 추진

## 8) 수수료

- 안전인증 수수료
  - (1)설계심사 (2)현장실사 (3)제품시험검사의 3단계로 부담하여 중도포기 및 심사보류시 수수료 부담을 최대한 경감토록 할 계정
- 상담 및 기본 지도비용은 2MD까지 무료화할 예정
- 중소기업 및 CE마크를 통하여 수출코자 하는 경우는 특별 할인·지원할 예정임

## 4. S-CE마크 인증서의 상호인정 계획

### 1) 필요성

CE마크 부착대상품으로 CE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EU역내로 반입이(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수출) 불가능하고, CE마크의 경우 EU역외국에 대하여는 인증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기업은 EU인증기관을 반드시 이용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진출하고 있는 EU인증기관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인증비용이 비쌀뿐 아니라 그들의 언어, 문화, 습관이 상이하여 업무추진에 애로가 많았는 바 우리의 S마크를 취득하는 경우 CE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발행하는 등의 상호 인증이 시급한 실정이다.

### 2) 추진결과

○ 공단과 EU인증기관인 영국의 AMTRI Vritas Ltd. 와 10개월에 걸친 협상을 통하여 '97. 5. 12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보다 지명도 높은 독일의 TUV와도 유사한 협정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 우리나라와 EU와의 국가간 상호인증협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92. 9. 예비 회담국으로 선정한 바 있고 '97년중 본 협상이 추진될 예정에 있어서 대략 3~5년후 협정체결이 가능할 것이며 단계별·부문별로 추진하게될 경우 Test Report의 상호인증은 빠른 시일에 가능할 수도 있다.

### 3) 향후 전망

○ 우리나라와 EU와의 '96 교역 총량은 365억\$이며, 수출이 153억\$, 수입이 212억\$로서 59억\$적자를 보이고 있고, 우리의 수출중 34.5%가 CE마크 부착 대상으로 파악('97. 2. 재경원 회의자료)되고 있어서 국가차원에서도 상호인증은 시급한 실정에 있으나 제도와 기술 및 표준(Standard)의 차이 등으로 단기간 내에 포괄적인 상호인증협정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